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민과 학생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메이커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메이커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5조)
- 마.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메이커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1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과 학생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이커”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 창작물 등을 공유하는 사람 또는 협력적 창작자를 말한다.
2. “메이커 문화”란 자아실현과 공익의 발전을 위해 만들고 공유되는 행위가 독려되는 사회의 행동 양식 중 하나를 말한다.
3. “메이커스페이스”란 메이커의 창작활동 및 작업, 메이커 교육, 소통과 교류 등을 위한 장비와 도구를 갖춘 협력적 공간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5. “메이커 교육”이란 상상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메이커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메이커문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범위) 시장은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교육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인력 양성 사업
4. 오산메이커교육센터와 연계한 관내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
5.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오산메이커교육센터) ① 시장은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메이커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직원 등의 자격요건, 복무, 급여 및 수당 지급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메이커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